OEO안심상해보험II(무배당)(26.05)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가. 1종 : OEO플랜(금리고정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3년 만기	2년납	만15세 ~90세	월납 연납
		3년납		
	4년 만기	2년납		
		3년납		
		4년납		
	5년 만기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나. 2종 : 실속플랜(금리연동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7년 만기	3년납	만15세 ~70세	월납 연납
		5년납		
		7년납		
	10년 만기	2년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다. 3종 :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 일반상해후유장해(20~79%) · 상해수술비	15년 만기	3년납	만15세 ~65세	월납 연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 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범용으로 판매할 수 있음.

④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

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 (적립부분) 적용이율
① 1종(CEO플랜(금리고정형)) : 연복리 2.75%
②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 "보장성-1701 공시이율"(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자격제한"의 표와 같이 적용함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립순보험료를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 또는 중도인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만기유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만기유지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에 만기유지환급금을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적용대상 미충족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③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 납입면제 발생시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보장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②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이 중지됨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①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①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③ ①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④ 회사는 ①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⑤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1종 : CEO플랜(금리고정형)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 2종 : 실속플랜(금리연동형)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 3종 :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120회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120회 (최초1회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120회 (최초1회한)
일반상해후유장해(20~79%)	상해사고로 20~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률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시	가입금액 (1사고당)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보장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적립부분 적용이율 이란?
적립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② 1종(CEO플랜(금리고정형))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③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매월변동)에 연동됩니다.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을 말하며, 회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주1)]와 운용자산이익률[주2)]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주1)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주2)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④ 이 상품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상해 1급, 40세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일반상해사망	0.000144	0.000067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0.000095	0.000078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0.000027	0.000017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1종 - 남 40세, 상해 1급, 5년만기 5년납,
2종 - 남 40세, 상해 1급, 10년만기 10년납,
3종 - 남 40세, 상해 1급, 15년만기 15년납)

보험가격지수(%)		
1종(CEO플랜(금리고정형))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83.5	81.9	84.5

(기준: 1종 - 여 40세, 상해 1급, 5년만기 5년납,
2종 - 여 40세, 상해 1급, 10년만기 10년납,
3종 - 여 40세, 상해 1급, 15년만기 15년납)

보험가격지수(%)		
1종(CEO플랜(금리고정형))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89.2	89.5	98.0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5년만기 전기납, 월납 100,000원
◎ 1종(CEO플랜(금리고정형))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50,000만원

(단위 : 원, %)

구 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	749,000	62.5	751,000	62.6
2년	2,400,000	1,800,000	75.0	1,805,000	75.2
3년	3,600,000	2,872,000	79.8	2,883,000	80.1
4년	4,800,000	3,968,000	82.7	3,988,000	83.1
5년	6,000,000	5,129,000	85.5	5,161,000	86.0

주1) 상기 예상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적립부분 적용이율(2.75%), 평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0%)
주2)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3) 위 표의 만기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4) 만기유지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에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며, 적용대상 미충족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100,000원
◎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일반상해사망 30,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5,000만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00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1,000만원

(단위 : 원, %)

구 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	689,000	57.5	697,000	58.1	697,000	58.1
3년	3,600,000	2,857,000	79.4	2,924,000	81.2	2,924,000	81.2
5년	6,000,000	5,029,000	83.8	5,214,000	86.9	5,214,000	86.9
7년	8,400,000	7,204,000	85.8	7,570,000	90.1	7,570,000	90.1
10년	12,000,000	10,303,000	85.9	11,061,000	92.2	11,061,000	92.2

주1) 상기 예상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2026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0%, "보장성-1701 공시이율" 1.60% 가정시)
주2)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액,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및 갱신담보의 갱신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0.2%를 적용합니다.
주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6) 가입 후 10년미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문답식 해설(Q/A)

가. 이 상품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의 최저보증이율은 무엇입니까?
☞ 연단위 복리 0.2%입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